

보도시점 (온라인) 2024. 6. 4.(화) 10:00
(지 면) 2024. 6. 4.(화) 석간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 6월 4일(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전 근로자 지원 사례>

- 인구감소지역인 ㄱ군에 300여 명이 넘게 근무하는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ㄱ군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인구유입효과는 미미했다. 다수의 근로자가 ㄱ군에 인접한 ㄴ시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앞으로 리조트의 근무자들이 ㄱ군 거주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다.
- ㄱ군에서는 리조트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하면 원룸 비용 등 주거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한편, 가족 단위 이주자에게는 별도의 맞춤형 지원 시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ㄱ군의 주거비용 지원으로 근로자들은 출퇴근 비용과 주거비용을 아끼고, 지역 상권은 이용자가 늘면서 리조트 이전 혜택을 많은 사람이 누리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생활인구 = 주민등록인구 + 주민·외국인을 제외한 체류인구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인구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 및 이전 근로자에 대한 지원 >

-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하였다.

< 생활인구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였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박진석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이은철 (044-205-344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현 행	개정안
<p>제13조(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p><신설></p>	<p>제13조(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p> <p>-----</p> <p>-----</p> <p>-----</p> <p>-----</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 나.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이주에 드는 비용 <p>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시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